

수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나60674(본소), 2023나6068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7. 6.

판 결 선 고 2023. 8. 17.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2. 14. 선고 2022가단87781(본소),
2022가단87798(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인 본소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사안의 개요

가. 2021. 9. 3.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7. 11. 24.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이자 월 400,000원에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망인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시흥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는데, 2021. 1. 22.에 이르러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이에 원고는,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2021. 1. 22.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그때까지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리금 24,400,000원(= 원금 20,000,000원 + 미지급 이자액 4,400,000원)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그 채권최고액의 전액 변제를 요구하는 피고의 강박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아파트 매도를 위하여 30,000,000원을 지급하고서야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었다. 이에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그 차액 5,600,000원(= 30,000,000원 - 24,4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고, 또한, 피고가 망인의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는 바람에 망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등기권리증 작성 비용 50,000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단독상속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액 5,650,000원 중 5,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나 원고 주장요지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해지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던 것인데,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급부(중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가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의 등기권리증 관련 확인서면 작성 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이국현, 판사 김용태, 판사 이은희